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으로 법령데이터 약 700만 건 시대 도래

-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결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령데이터 76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94, 2023. 9. 9.]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1년이 지난 후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미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제소기간 내 처분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소속직원들을 파견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경영지원 수수료를 미수취 또는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2합6223 (2024. 9. 12)]

【제목】

법인

【결정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들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업무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종5070 / 조심2021전3196 / 조심2017부3567 / 조심2014전3475 / 조심2015서1673 / 조심2018종4299 / 조심2014종0087

【주문】

나주세무서장이 2022.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7사업연도부터 및 2020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000공과대학 설립을 위해 000설립단이 지출한 인건비 등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조세심판원 재결례 >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월),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

이번에는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범위를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메뉴(예시)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 >

판례·해석례등 별표·서식 행정·공공기관 정보 판례 헌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행정심판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중앙부처 1차 해석 위원회결정문 공공기관 정관/규정 대학 규칙/규정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등 (헌재결정례·행정심판재결례) ☐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이유 재결요지 참조법령 ☐ 전체 ☐ 일반 ☒ 특별 전체 결과내 검색어를 입력 요약정보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중앙부처 1차 해석' 메뉴에서 확인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는 '행정심판 재결례' 메뉴에서 확인(일반/특별)

그리고,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7만 건 외에도 약 7.5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되어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이현승	(044-200-678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